

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88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9. 3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지방공기업법 개정(2009. 4. 1. 공포, 2009.10.2. 시행)에 따른 공사 임원의 임명 및 연임 등에 관한 사항과,
- 지방자치법 제35조『지방의회의원 지방공사·공단 임직원 겸직 금지』 규정에 저촉된 당연직이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공사 임원(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, 감사)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9조제1항)
-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3년 단위로 연임하였으나,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2항)
- 임원의 결격사유 중 “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”를 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에 맞게 삭제함(안 제10조)
- 사장 임명시 거치던 “사장추천위원회”가 “임원추천위원회”로 명칭이 변경되고, 대상도 이사 및 감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“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임원추천위원회”로 개정함(안 제11조)
- 지방자치법에 저촉된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“지방의회의 지방공사 소관 위원회 위원장”을 삭제하고,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“공기업분야 전문가”를 추가함(안 제12조제1항)
-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명하던 것을, “임원추천위원회”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는 사장이,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함(안 제12조제2항)

- 감사는 “임원추천위원회”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함
(안 제13조)
- “사장추천위원회”가 “임원추천위원회”로 명칭이 변경되고 “임원추천위원회”를 공사에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, 「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폐지함.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기간 : 2009. 8. 4. ~ 8. 24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4조제2항 단서”를 “제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항 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-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0조 본문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제4호 중 “법률 또는 법원의”를 “법원의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비상임이사에는 세무·회계·공기업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되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, 도시·건설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.
-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”를 “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23조제4항 중 “정관”을 “회계규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임이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과장 박석운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예산2담당 정양민
	담당자 성명·전화	한복수 (행정 2807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 (정관) ① (생략)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 ③ (생략)</p>	<p>제7조 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4조제3항 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 (임원)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을 두되, 상임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 ② 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 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 ② ----- --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</p>
<p>제10조 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~ 3. (생략) 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</p>	<p>제10조 (임원의 결격사유) ---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법원의 -----</p>
<p>제11조 (사장)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,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안산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또한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1조 (사장) ①----- -----임원추천위원회----- ----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 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, 도시·건설업무 담당국장, 지방의회의 지방공사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,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</p> <p>②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2조 (이사) ① 비상임이사에는 세무·회계·공기업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되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, 도시·건설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.</p> <p>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 (감사) ① <u>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.</u> 다만, 정관으로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6조 제3항에 따른 비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3조 (감사) ① <u>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도록</u> <u>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</u> <u>야 한다.</u>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3조 (회계원칙 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 리, 계약의 기준 및 절차,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정관으로</u> <u>정한다</u>.</p>	<p>제23조 (회계원칙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회계규정 ----- -----.</p>